

의안번호	2218279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5.3.13.
추 계 번호	26D0728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민국절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5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7억 9,500만원(연평균 3억 5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민국절 국경일 지정 (안 제2조제2호 신설)	359	359	359	359	359	1,795	35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국경일의 종류)	•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음 - 민국절: 4월 11일(제2호 신설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(국경일의 종류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민국절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일 행사 등을 위한 소요 비용을 추계함
- 국경일 행사 소요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하며, 소요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: 국경일에 민국절 추가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4개의 국경일 행사 소요 비용을 바탕으로 민국절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일 행사 등을 위한 소요 비용을 추계
 - 현행법¹⁾에 따른 국경일은 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이며, 국회 주관으로 국경일 행사가 진행되는 제헌절을 제외한 4개 국경일 행사 비용을 추계
- 현재 ‘국경일 등 정부행사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‘국경일 행사’의 2026년도 예산으로 14억 3,400만원이 편성²⁾되어 있으므로, 추계기간인 5년 동안 연간 민국절 행사 비용으로 3억 5,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1,434백만원(2026년도 예산) = 359백만원(국경일 행사) × 4회(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)

1)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(국경일의 종류)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3·1절: 3월 1일
2. 제헌절: 7월 17일
3. 광복절: 8월 15일
4. 개천절: 10월 3일
5. 한글날: 10월 9일

2)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및제세, 임차료, 일반용역비,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포함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민국절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5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7억 9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민국절이 국경일로 지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민국절 국경일 지정 (안 제2조제2호 신설)	359	359	359	359	359	1,7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